

KB 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무배당)(26.07)

상품요약서

가.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1) 가입자격제한

☐ 가입가능나이

☒ 1종(홈케어)

구분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보통약관	화재손해(실손보상, 비례보상) 화재배상책임 II	-	5년, 7년, 10년, 15년	전기납	월납
특별약관	풍수재손해(실손보상, 비례보상)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 재산손해(실손보상, 비례보상) 스프링클러누출손해(실손보상, 비례보상) 도난손해 전기위험(비례보상) 항공기·차량손해(비례보상)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임차자배상책임(화재)(비례보상) 유리손해(비례보상) 신체손해배상책임(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건물) 임대인배상책임 II 임대인배상책임 II (화재배상제외) 임대인의(화재)임대료손실 주택임시거주비(1-90일, 화재) 주택임시거주비(1-90일, 붕괴·침강 및 사태) 주택임시거주비(1-90일, 급배수시설누출) 주택임시거주일당(1-10일, 화재) 주택임시거주일당(1-10일, 붕괴·침강 및 사태) 주택임시거주일당(1-10일, 급배수시설누출) 재난배상책임 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기부담금10%)(주택)				

구분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특 약 관	일반상해사망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일반상해후유장해(3~79%) 화재상해사망 화재상해80%이상후유장해 화재상해후유장해(3~79%) 붕괴침강및사태상해사망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II 상해흉터복원수술비 산업재해장해진단비 출인원비용손해 골프용품손해	만15세 ~70세	5년, 7년, 10년, 15년		전기납	월납
	(가족)과실치사상 벌금비용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벌금비용	만18세 ~70세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행정소송법률비용손해 임대차보증금법률비용손해 부동산소유권법률비용손해	만20세 ~70세				
특 별 약 관	화재벌금 가족화재벌금 충간소음피해보장	만15세이 상	5년, 7년, 10년, 15년		전기납	월납
	6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12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신6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22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신10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8대문화용품수리비용손해	만15세이 상	5년, 7년, 10년		전기납	월납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 【갱신계약】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누수사고 제외) 【갱신계약】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화재배상 제외) 【갱신계약】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누수사고, 화재배상 제외) 【갱신계약】	-	최초	3년	전기납	월납
			갱신	1~3 년		

- 주) 1.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2.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 【갱신계약】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누수사고 제외) 【갱신계약】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화재배상 제외) 【갱신계약】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누수사고, 화재배상 제외) 【갱신계약】 특별약관은 3년 갱신형으로 운영함.
3. 【갱신계약】 의 경우, 기본계약의 보험기간 이내에 한하여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3년마다 자동갱신함.

■ 2종(비즈케어)

구분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보 통 약 관	화재손해(실손보상, 비례보상) 화재배상책임 II	-	3년, 5년, 7년, 10년, 15년	전기납	월납
특 별 약 관	풍수재손해(실손보상, 비례보상) 구내폭발·파열위험(실손보상, 비례보상)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 재산손해(실손보상, 비례보상) 구내냉동(냉장)위험(실손보상, 비례보상) 스프링클러누출손해(실손보상, 비례보상) 전기위험(실손보상, 비례보상) 항공기·차량손해(실손보상, 비례보상) 위조지폐손해 도난손해 유리손해(실손보상, 비례보상) 점포휴업손해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음식물 배상책임III 가스사고 배상책임 II 의약품등 배상책임 약국시설 배상책임 주유소 배상책임 ^{주5)} 학교경영자 배상책임 주차장 배상책임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시설수리비용지원(화재) 차량정비업소배상책임 차량정비업소배상책임 II 임차자배상책임(화재)(실손보상, 비례보상) 신체손해배상책임(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건물)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II 실내 유기기구(트램펄린, 에어바운스) 대인 배상책임 II 추가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화재배상제외) 야외간판풍수재손해(실손보상, 비례보상) 점포휴업일당(1일이상) 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기부담금10%)(일반)				

구분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특 별 약 관	이미용사(시설소유(관리)위험포함)배상책임 보관자배상책임(영업시설(일반수탁물)) 보관자배상책임(체육시설(일반수탁물)) 사회복지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사회복지시설 종업원신체피해 배상책임 추가 요양보호사(재가급여서비스) 배상책임 학원및교습소배상책임(대인) 학원및교습소배상책임(대물) 학원및교습소 구내치료비 추가 학원및교습소 구내외치료비 추가 재난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재난배상제외)	-	3년, 5년, 7년, 10년, 15년		전기납	월납
	일반상해사망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일반상해후유장해(3~79%) 화재상해사망 화재상해80%이상후유장해 화재상해후유장해(3~79%) 붕괴침강및사태상해사망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II 상해흉터복원수술비 산업재해장해진단비 출원비용손해 골프용품손해	만15세 ~70세	3년, 5년, 7년, 10년, 15년		전기납	월납
	(가족)과실치사상 벌금비용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벌금비용	만18세 ~70세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행정소송법률비용손해 임대차보증금법률비용손해 부동산소유권법률비용손해	만20세 ~70세				
	화재벌금 가족화재벌금	만15세이 상				
	6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12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신6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22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신10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8대문화용품수리비용손해	만15세이 상	5년, 7년, 10년		전기납	월납
	주유소배상책임 【갱신계약】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 【갱신계약】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누수사고 제외) 【갱신계약】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화재배상 제외) 【갱신계약】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누수사고, 화재배상 제외) 【갱신계약】	-	최초	3년	전기납	월납
			갱신	1~3 년		

주) 1.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2. 일반/공장물건의 실손보상은 건물(내부시설, 집기비품, 기계 포함) 20억, 동산 2억한도 이내로 함.

3. 주유소배상책임 【갱신계약】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 【갱신계약】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누수사

고 제외) 【갱신계약】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화재배상 제외) 【갱신계약】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누수사고, 화재배상 제외) 【갱신계약】 특별약관은 3년 갱신형으로 운영함.

4. 【갱신계약】의 경우, 기본계약의 보험기간 이내에 한하여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3년마다 자동갱신함.
5. 주주소배상책임은 3년만기로만 운영함.

□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

1. 보험가입대상 건물(물건)의 급수 및 영위직중 등 청약서상 기재내용은 계약인수 및 보상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청약시 빠짐없이 사실 그대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보험가입대상의 건물구조, 영위직중, 과거 사고유무, 소재지,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피보험자의 직업 및 과거병력 등 청약서상 기재내용은 계약인수 및 보상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청약시 빠짐없이 사실 그대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당시 또는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함으로써 인하여 이륜자동차의 운전과 관련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상해를 입을 위험 정도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짐. 이륜자동차의 운전자가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을 부가시에는 이륜자동차 운전을 제외한 직업 또는 직무에 해당하는 상해급수를 적용함.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로 정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음.
5. 다수의 보험의 목적을 추가하여 가입이 가능함.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일부 보장의 가입이 불가능 할 수 있음.
6. 유가족 안내 강화에 관한 사항
: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단체구성원) 이외의 자(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로 지정되는 계약의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의 확인서가 필요함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함
7. 기타 특별약관운영에 관한 사항
<1종(홈케어)>
 - 1) 화재손해(실손보상, 비례보상) 보장 부담보 특별약관과 화재배상책임Ⅱ 보장 부담보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음.
 - 2)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및 스프링클러누출손해(실손보상, 비례보상) 특별약관은 화재손해(실손보상, 비례보상) 보장을 가입한 보험의 목적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 3) 보험의 목적이 특수건물인 경우, 신체손해배상책임(특수건물)과 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건물)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하여야 함.
 - 4) 보험의 목적이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부동산이 아닌 경우, 다음의 특별약관은 가입할 수 없음.

임대인의(화재)임대료손실 특별약관
임대인배상책임Ⅱ 특별약관
임대인배상책임Ⅱ(화재배상제외) 특별약관

- 5) 하나의 보험의 목적에 임대인배상책임Ⅱ과 임대인배상책임Ⅱ(화재배상제외)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음.
- 6) 보험의 목적이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부동산인 경우, 다음의 특별약관은 가입할 수 없음.

주택임시거주비(1-90일, 화재) 주택임시거주비(1-90일, 붕괴·침강 및 사태) 주택임시거주비(1-90일, 급배수시설누출) 주택임시거주일당(1-10일, 화재) 주택임시거주일당(1-10일, 붕괴·침강 및 사태) 주택임시거주일당(1-10일, 급배수시설누출) 임차자배상책임(화재)(실손보상, 비례보상) 특별약관	6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특별약관 12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특별약관 신6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특별약관 22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특별약관 신10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특별약관 8대문화용품수리비용손해 특별약관
---	---

- 7) 화재손해(실손보상, 비례보상) 보장의 보험목적으로 건물을 가입하는 경우, 임차자배상책임(화재)(실손보상, 비례보상) 특별약관은 가입할 수 없음.
- 8)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임대차보증금법률비용손해, 부동산소유권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음.
- 9) 화재벌금 특별약관과 가족화재벌금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음.
- 10)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IV(화재배상 제외) 【갱신계약】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IV(누수사고, 화재배상 제외) 【갱신계약】 특별약관은 화재배상책임II 보장 또는 신체손해배상책임(특수건물) 및 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건물)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함
- 11)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IV 【갱신계약】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IV(누수사고 제외) 【갱신계약】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IV(화재배상 제외) 【갱신계약】 및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IV(누수사고, 화재배상 제외) 【갱신계약】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음.
- 12) 출원원비용손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500만원 이하로 함.
- 13) 12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특별약관과 6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음.
- 14) 12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특별약관과 신6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음.
- 15) 22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특별약관과 12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신10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신6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6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음.
- 16) 이 상품은 독립특별약관을 추가로 부가하여 운용할 수 있음.

<2중(비즈케어)>

- 1) 화재손해(실손보상, 비례보상) 보장 부담보 특별약관과 화재배상책임II 보장 부담보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음.
- 2)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시설수리비용지원(화재) 및 스프링클러누출손해(실손보상, 비례보상) 특별약관은 화재손해(실손보상, 비례보상) 보장을 가입한 보험의 목적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 3) 점포휴업손해, 점포휴업일당(1일이상), 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기부담금10%)(일반), 위조지폐손해 및 스프링클러누출손해(실손보상, 비례보상) 특별약관은 일반물건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 4) 보험의 목적이 특수건물인 경우, 신체손해배상책임(특수건물)과 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건물)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하여야 함.
- 5) 화재손해(실손보상, 비례보상) 보장의 보험목적으로 건물을 가입하는 경우, 임차자배상책임(화재)(실손보상, 비례보상) 특별약관은 가입할 수 없음.
- 6)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임대차보증금법률비용손해, 부동산소유권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음.
- 7) 화재벌금 특별약관과 가족화재벌금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음.
- 8)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IV(화재배상 제외) 【갱신계약】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IV(누수사고, 화재배상 제외) 【갱신계약】 특별약관은 화재배상책임II 보장 또는 신체손해배상책임(특수건물) 및 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건물)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함
- 9)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IV 【갱신계약】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IV(누수사고 제외) 【갱신계약】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IV(화재배상 제외) 【갱신계약】 및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IV(누수사고, 화재배상 제외) 【갱신계약】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음
- 10)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과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배상제외),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재난배상제외)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음.
- 11) 차량정비업소배상책임 특별약관과 차량정비업소배상책임II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음.
- 12) 출원원비용손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500만원 이하로 함.
- 13) 사회복지시설 중입원신체피해 배상책임 추가 특별약관은 사회복지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 14) 학원및교습소 구내치료비 추가 및 학원및교습소 구내외치료비 추가 특별약관은 학원및교습소배상책임(대인)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 15) 학원및교습소 구내치료비 추가 특별약관과 학원및교습소 구내외치료비 추가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음.
- 16) 보관자배상책임(영업시설(일반수탁물)) 및 보관자배상책임(체육시설(일반수탁물)) 특별약관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재난배상제외),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배상제외),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 17) 학원및교습소배상책임(대인) 및 학원및교습소배상책임(대물) 특별약관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및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배상제외) 특별약관과 동시에 가입할 수 없음. 단, 학원및교습소배상책임(대인) 및 학원및교습소배상책임(대물) 특별약관은 가입한 보험목적에 엘리베이터 시설이 포함되는 경우 엘리베이터 시설에 대하여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특별약관 및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배상제외) 특별약관과 동시에 가입할 수 있음.
- 18) 12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특별약관과 6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음.
- 19) 12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특별약관과 신6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음.
- 20) 22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특별약관과 12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신10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신6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6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음
- 21) 실내 유기기구(트램폴린, 에어바운스) 대인 배상책임 II 추가특별약관은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II 특별약관의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업종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 22) 이 상품은 독립특별약관을 추가로 부가하여 운용할 수 있음.

2) 상품의 특이사항

☐ (보장부분) 적용이율 : 2.5%

☐ (적립부분) 공시이율 : "보장성-1701 공시이율"
(단, 최저보증이율 연단위 복리 0.2%)

☐ 보험기간, 납입기간

"1) 가입자격제한, ☐ 가입가능나이"의 표와 같이 적용하며, 각 특약의 보험기간은 해당 피보험자의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납입주기 : 월납

☐ 장기유지보너스에 관한 사항

- 1) 적용대상 : 이 보험계약의 만기 시점에 해지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지 않고 4)에서 정한 장기유지 보너스 발생일 까지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
- 2) 지급방식 : 3)에서 정한 장기유지보너스 금액을 4)에서 정한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에 1)에서 정한 지급대상 계약의 만기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함.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으로 이를 적용함.
- 3) 장기유지보너스 금액 : (월납 보장보험료 X 4% + 월납 적립보험료 X 1%) X 12 X 납입기간
다만, 영업보험료 합계액은 '7.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에 따른 보험료 할인여부와는 관계없이 할인전 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 4)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 보험기간이 끝나는날(계약만기시점의 계약해당일)을 말함.
※ 단, 【갱신계약】 특별약관은 장기유지보너스를 적용하지 않음.
- 5) 적립보험료가 1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음.

☐ 만기환급금에 관한 사항

적립순보험료를 이 상품의 "보장성-1701 공시이율"로 만기시까지 적립한 금액(중도인출액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①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에서 계산된 기본계약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이 계약에서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범위 내에서 중도인출 할 수 있음.
단, 중도인출은 보험기간 내에 한하며,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함.
- ② ①에도 불구하고 중도인출액의 총 누적액의 한도는 중도인출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본계약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중 적은금액의 80%를 한도로 함.
- ③ 중도인출시 중도인출금액 및 만기환급금(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 시점까지 중도인출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만기환급금(또는 해약환급금)이 감소함.

□ 선납보험료에 관한 사항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이 경우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적립보험료는 이 보험의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드리고,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보장보험료에 한하여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함

□ 갱신계약에 관한 사항

- 1) 대상
 - 【갱신계약】 특별약관
- 2) 보험료 계산에 관한 사항
 - (가) 【갱신계약】 특별약관은 해당담보 갱신주기(3년)마다 자동갱신 됨.
 - (나) 갱신시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함. 단,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시점까지 잔여보험기간이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함.
 - (다) 갱신시 보험료 통보
 - 회사는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납입할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통보함.
- 3) 보험료 재산출에 관한 사항
 - 【갱신계약】에 해당하는 특별약관은 갱신시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사용하며, 갱신계약 보험료는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계약의 해당 보험년도 개시일부터 갱신주기(3년)동안 적용함.
- 4) 보험료 납입유예, 계약부활 등 계약변경시의 보험료 적용
 - 계약변경시의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유예, 계약부활 등 계약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를 적용함
- 5) 보험료 납입방법
 - 【갱신계약】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전기간 납입하는 것으로 함

□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가. 동일한 단체에 소속된 5인 이상의 구성원 각각이 보험계약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할 때 영업보험료의 1%를 할인함.

★ 단체의 정의

- 1)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2)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3) 그 밖에 단체의 구성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사항

- ①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님에 따라 아래

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1)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 2)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3)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 4)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② 회사는 ①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 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림.

③ ①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또는 반환받을)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안내함.

④ 회사는 ①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최신의 통계를 반영하여 보험료산출기초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적용함.

: 계약내용 변경일부터 재산출된 보험료산출기초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보험금이 변경될 수 있음.

⑤ ①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하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음.

□ 산업재해장애 진단비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

가.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함

나.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1)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함

(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은 얻은 경우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함

2) 계약내용 변경에 대한 안내 절차

1)의 (나)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30일 이전까지 변경 내용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림

3)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에 대한 계약자 확인

회사는 계약 을 체결 할 때 계약자에게 "나.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음

(가) 계약내용 변경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나) 계약내용 변경으로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음

4)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기초율 변경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보장내용이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최신의 통계를 반영하여 보험료산출 기초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적용함

(가) "나.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부터 재산출된 보험료산출기초율을 적용함

(나) 재산출된 보험료산출기초율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에는 "나.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의 인하 또는 보험금을 증액할 수 있음

□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된 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율은 보장보험료는 평균공시이율 + 1%범위내에서 적용하며, 적립보험료는 적용하지 아니함.

※ 보장용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 1종(홀케어)

1)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화재손해 (실손보상, 비례보상)	화재(벼락포함), 소방피난 손해 발생시(주택의 경우 폭발파열손해 포함)	합계액을 가입금액 한도 (실손 및 비례보상. 단, 잔존물제거비용은 화재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잔존물 제거비용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심는 비용	
화재배상책임 II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을 입혀 혹은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가입한 의무보험에 해당할 경우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함)	대인(1인당) - 사망 : 가입금액 한도 - 후유장애 : 가입금액 한도 - 부상 : 가입금액의 20% ^{주)} 대물(1사고당) : 보험가입금액 한도

주) 대인1억원한도 가입시 최고 2,000만원, 대인1.5억원한도 가입시 최고 3,000만원

□ 특별약관

◇ 재물손해 관련 특별약관(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풍수재손해 (실손보상, 비례보상)	풍수재 및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떨어지는 물체로 인한 손해를 보상(특수건물)	가입금액 한도
	풍수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재해방지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비특수건물)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붕괴·침강및사태로 인한재산손해 (실손보상, 비례보상)	붕괴, 침강 및 사태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재산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한도
스프링클러누출손해(실 손보상, 비례보상)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의 누수 또는 방수로 인한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한도
도난손해	보험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도난, 망가짐, 훼손 및 파손된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한도
전기위험 (비례보상)	전기적인 사고로 발전기, 변압기, 배전반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나 장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단, 1사고당 5만원 공제)
항공기차량손해 (비례보상)	보험의 목적에 항공기의 추락, 접촉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인한 손해 및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인한 손해	가입금액 한도 (당해 물건가액의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골프용품손해	골프시설 구내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골프용품손해에 생긴 화재, 도난, 파손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
유리손해 (비례보상)	보험의 목적인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에 태풍, 냉해, 파열 등의 사고로 발생한 파손 손해	가입금액 한도 (단, 1사고당 2만원 공제)
건물복구비용지원 (화재)	화재손해에서 정한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겨 수리, 복구시	가입금액 한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임대인의 (화재) 임대료손실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주택에 화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임차인이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료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약관에서 정한 임대료 손실 보험금
주택임시거주비(1-90 일, 화재)	주택의 화재로 인해 보험의 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1사고마다 손해발생 후 1일당 지급)	1일당 25만원한도(90일한도)
주택임시거주비(1-90 일, 붕괴침강 및 사태)	주택의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해 보험의 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1사고마다 손해발생 후 1일당 지급)	1일당 25만원한도(90일한도)
주택임시거주비(1-90 일, 급배수시설누출)	주택의 급배수시설 누출로 인해 보험의 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1사고마다 손해발생 후 1일당 지급)	1일당 25만원한도(90일한도)
주택임시거주일당(1-1 0일, 화재)	주택의 화재로 인해 보험의 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1사고마다 손해발생 후 1일당 지급)	1일당 보험가입금액(10일한도)
주택임시거주일당(1-1 0일, 붕괴침강 및 사태)	주택의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해 보험의 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1사고마다 손해발생 후 1일당 지급)	1일당 보험가입금액(10일한도)
주택임시거주일당(1-1 0일, 급배수시설누출)	주택의 급배수시설 누출로 인해 보험의 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1사고마다 손해발생 후 1일당 지급)	1일당 보험가입금액(10일한도)
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기부담금10%)(주택)	보험의 목적의 구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 손해 보상	가입금액 (손해액의 10% 자기부담금 공제)

◇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임차자 배상책임(화재) (비례보상)	임차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신체손해배상책임 (특수건물)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 또는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를 보상	관련법령에서 정한 금액 한도
화재대물배상책임 (특수건물)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관련법령에서 정한 금액 한도
임대인배상책임Ⅱ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대인배상책임 또는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임대인배상책임Ⅱ (화재배상제외)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화재폭발제외)로 피보험자가 대인배상책임 또는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 【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1)} 이후에 본인 및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 (누수사고 제외) 【갱신계약】	본인 및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단, 누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은 제외)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 (화재배상 제외) 【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주1)} 이후에 본인 및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단, 화재(폭발포함)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은 제외)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 (누수사고, 화재배상 제외) 【갱신계약】	본인 및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단, 누수사고, 화재(폭발포함)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은 제외)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주1)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누수 이외의 사고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 특수건물이라 함은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 상해, 질병 및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반상해사망	일반상해로 사망시	가입금액
일반상해80% 이상후유장해	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최초 1회한)
일반상해후유장해 (3~79%)	일반상해로 3~79%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 지급률
화재상해사망	화재상해로 사망시	가입금액
화재상해80% 이상후유장해	화재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최초 1회한)
화재상해후유장해 (3~79%)	화재상해로 3~79%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 지급률
붕괴침강및사태 상해사망	붕괴, 침강 및 사태상해로 사망시	가입금액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II	일반상해사고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시(180일 한도)	가입금액 (1일당)
산업재해장해진단비	업무상의 사유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해등급(진폐장해등급 포함)을 인정받은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주1)}
상해흉터복원 수술비	피보험자가 외래의 우연한 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한 사고에 대하여 500만원 한도에서 보상	안면부 수술 1cm당 14만원 상지·하지 수술 1cm당 7만원 (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출인원비용손해	18층 이상 국내소재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에 출인원을 행한 경우 출인원을 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축하라운드 비용은 3개월 이내) 출인원 비용을 소요한 경우 (기념품,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가입금액 한도 (최초1회한)
6대가전제품 수리비용손해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보상(자기부담금 2만원) * 6대가전 :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가입금액 한도
12대가전제품 수리비용손해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보상(자기부담금 2만원) * 12대가전 :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가입금액 한도
신6대가전제품 수리비용손해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보상(자기부담금 2만원) * 신6대가전 :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가입금액 한도
22대가전제품 수리비용손해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보상(자기부담금 2만원) * 22대가전 : 가전제품(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정수기, 전기오븐, 식기건조기, 커피머신, 전기레인지, 전기밥솥, 선풍기, 에어프라이어, 음식물처리기, 온수매트(전기매트 포함)	가입금액 한도
신10대가전제품 수리비용손해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보상(자기부담금 2만원) * 신10대가전 : 정수기, 전기오븐, 식기건조기, 커피머신, 전기레인지, 전기밥솥, 선풍기, 에어프라이어, 음식물처리기, 온수매트(전기매트 포함)	가입금액 한도
8대문화용품 수리비용손해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보상(자기부담금 2만원) * 8대 문화용품 : 컴퓨터, 안마의자, 노트북, 프린터, 헤어스타일러, 드라이기, 비데, 와인셀러	가입금액 한도
총간소음피해보장	총간소음이 발생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3조(총간소음 관리 등)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음측정대행업체에서 실시한 소음측정결과가, [공동주택 총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총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 (최초1회한)
화재벌금	대한민국내에서 벌금형의 원인이 되는 화재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2,000만원 한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족화재별금	대한민국내에서 벌금형의 원인이 되는 화재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2,000만원 한도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민사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 + 송달료 : 500만원한도
임대차보증금법률비용 손해	피보험자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 + 송달료 : 500만원한도
(가족)과실치사상 벌금비용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이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또는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된 경우	700만원 한도(과실치상일 경우 500만원)
부동산소유권법률비용 손해	피보험자에게 부동산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변호사비용 : 1,500만원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 + 송달료 : 500만원한도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 벌금비용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2,000만원 한도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행정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 + 송달료 : 500만원한도

주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해등급에 따른 지급금액 예시표(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장해등급	지급금액	장해등급	지급금액
1급	1,000만원	7 ~ 8급	300만원
2급	800만원	9 ~ 10급	200만원
3 ~ 4급	700만원	11 ~ 12급	100만원
5 ~ 6급	500만원	13 ~ 14급	50만원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종(비즈케어)

1)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화재손해 (실손보상, 비례보상)	화재(벼락포함), 소방·피난 손해 발생시(주택의 경우 폭발·파열손해 포함)	합계액을 가입금액 한도 (실손 및 비례보상. 단, 잔존물제거비용은 화재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잔존물 제거비용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심는 비용	
화재배상책임 II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을 입혀 혹은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가입한 의무보험에 해당할 경우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함)	대인(1인당) - 사망 : 가입금액 한도 - 후유장애 : 가입금액 한도 - 부상 : 가입금액의 20%한도 ^{주)} 대물(1사고당) : 보험가입금액 한도

주) 대인1억원한도 가입시 최고 2,000만원, 대인1.5억원한도 가입시 최고 3,000만원

□ 특별약관

◇ 재물손해 관련 특별약관(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풍수재손해 (실손보상, 비례보상)	풍수재 및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떨어지는 물체로 인한 손해를 보상(특수건물)	가입금액 한도
	풍수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재해방지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비특수 건물)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구내폭발·파열 위험(실손보상, 비례보상)	구내에서 발생한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한도
붕괴·침강및사태로 인한재산손해 (실손보상, 비례보상)	붕괴, 침강 및 사태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재산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한도
구내냉동(냉장) 위험(실손보상, 비례보상)	구내에서의 화재로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파손, 변조로 인한 온도의 변화로 냉동(냉장)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한도
스프링클러누출손해(실 손보상, 비례보상)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의 누수 또는 방수로 인한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한도
점포휴업손해	화재·폭발·파열 등으로 인하여 휴업 또는 영업이 저해되어 생긴 손해를 보상(약정복구기간 2개월)	가입금액 한도
도난손해	보험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도난, 망가짐, 훼손 및 파손된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한도
전기위험 (실손보상, 비례보상)	전기적인 사고로 발전기, 변압기, 배전반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나 장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단, 1사고당 5만원 공제)
항공기차량손해 (실손보상, 비례보상)	보험의 목적에 항공기의 추락, 접촉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인한 손해 및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인한 손해	가입금액 한도 (당해 물건가액의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골프용품손해	골프시설 구내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골프용품손해에 생긴 화재, 도난, 파손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
유리손해 (실손보상, 비례보상)	보험의 목적인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에 태풍, 냉해, 파열 등의 사고로 발생한 파손 손해	가입금액 한도 (단, 1사고당 2만원 공제)
건물복구비용지원 (화재)	화재손해에서 정한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겨 수리, 복구시	가입금액 한도
시설수리비용지원 (화재)	화재손해에서 정한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겨 수리, 복구시	가입금액 한도
야외간판 풍수재손해 (실손보상, 비례보상)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또는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야외간판에 생긴 손해와 재해방지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한도 (단, 1사고당 50만원 공제)
점포휴업일당 (1일이상)	보험의 목적이 아래의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결과로 휴업 또는 영업이 저해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약정 복구기간 2개월) 1. 화재, 2. 버락 3. 파열 또는 폭발 4. 항공기의 추락 또는 접촉이나 항공기로부터의 물체의 떨어짐 5.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	복구기간 내 휴업일수 × 가입금액
위조지폐손해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의 피고용인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관련 업무를 포함) 구내에서 위조지폐의 수취로 생긴 실손 손해액	가입금액 한도
급배수시설누출손해 (자기부담금10%)(일반)	보험의 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 손해 보상	가입금액 (손해액의 10% 자기부담금 공제)

◇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임차자 배상책임(화재) (실손보상, 비례보상)	임차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1인당 및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음식물배상책임Ⅲ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1인당 및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신체손해배상책임 (특수건물)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 또는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를 보상	관련법령에서 정한 금액 한도
화재대물배상책임 (특수건물)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관련법령에서 정한 금액 한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스사고배상책임 II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 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1인당 및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의약품등배상책임	의약품 등을 타인에게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 등에 따라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결과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	1인당 및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단, 1사고당 10만원 공제)
약국시설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약국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가뜨려 지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	1인당 및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단, 1사고당 10만원 공제)
주유소배상책임 주유소배상책임 【갱신계약】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유소 및 그 주유소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1인당 및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학교경영자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학교시설 및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결과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	1인당 및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대인/대물 각 10만원공제)
주차장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1인당 및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차량정비업소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차량정비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차량정비업소 배상책임 II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차량정비업무(정비의 목적으로 차량을 수탁, 시험운전, 인도하는 과정을 포함)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어린이놀이 시설배상책임 II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한도
실내 유기기구(트램펄린, 에어바운스) 대인 배상책임 II 추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유기기구(에어바운스, 트램펄린)와 관련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한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화재배상제외)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화재폭발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1인당 및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요양보호사(재가급여서비스) 배상책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피보험자가 요양보호사로서 행한 업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중 가.목 방문요양 또는 나.목 방문목욕)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이미용사 (시설소유(관리) 위험포함)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이·미용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이용사, 미용사의 직업상의 과실을 포함합니다. 단, 두피를 제외한 얼굴 및 피부미용에 관한 행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사회복지시설소유 (관리)자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사회복지관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인당 및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사회복지시설 종업원신체피해 배상책임 추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종업원(근로자)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학원및교습소 배상책임(대인)	피보험자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원시설이나 학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학원및교습소 배상책임(대물)	피보험자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원시설이나 학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학원및교습소 구내치료비 추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학원시설 구내에서 우연한 사고로 시설물의 이용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학원및교습소 구내외치료비 추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시설물의 이용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보관자배상책임 (영업시설 (일반수탁물))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관자배상책임 (체육시설 (일반수탁물))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재난배상책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붕괴, 폭발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을 입혀 혹은 재물을 망가뜨려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한도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재난배상제외)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화재, 폭발, 붕괴 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1인당 및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주1)} 이후에 본인 및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누수사고 제외)【갱신계약】	본인 및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단, 누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은 제외)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화재배상 제외)【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주1)} 이후에 본인 및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단, 화재(폭발포함)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은 제외)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누수사고, 화재배상 제외)【갱신계약】	본인 및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단, 누수사고, 화재(폭발포함)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은 제외)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주1)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누수 이외의 사고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 특수건물이라 함은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 상해, 질병 및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반상해사망	일반상해로 사망시	가입금액
일반상해80% 이상후유장해	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최초 1회한)
일반상해후유장해 (3~79%)	일반상해로 3~79%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 지급률
화재상해사망	화재상해로 사망시	가입금액
화재상해80% 이상후유장해	화재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최초 1회한)
화재상해후유장해 (3~79%)	화재상해로 3~79%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 지급률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붕괴침강및사태 상해사망	붕괴, 침강 및 사태상해로 사망시	가입금액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II	일반상해사고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시(180일 한도)	가입금액 (1일당)
산업재해장해진단비	업무상의 사유로 신체에 장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해등급(진폐장해등급 포함)을 인정받은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주1)}
상해흉터복원 수술비	피보험자가 외래의 우연한 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애,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한 사고에 대하여 500만원 한도에서 보상	안면부 수술 1cm당 14만원
		상지·하지 수술 1cm당 7만원 (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출인원비용손해	18홀 이상 국내소재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에 출인원을 행한 경우 출인원을 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축하라운드 비용은 3개월 이내) 출인원 비용을 소요한 경우 (기념품,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가입금액 한도 (최초1회한)
6대가전제품 수리비용손해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보상(자기부담금 2만원) * 6대가전 :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가입금액 한도
12대가전제품 수리비용손해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보상(자기부담금 2만원) * 12대가전 :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가입금액 한도
신6대가전제품 수리비용손해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보상(자기부담금 2만원) * 신6대가전 :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가입금액 한도
22대가전제품 수리비용손해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보상(자기부담금 2만원) * 22대가전 : 가전제품(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정수기, 전기오븐, 식기건조기, 커피머신, 전기레인지, 전기밥솥, 선풍기, 에어프라이어, 음식물처리기, 온수매트(전기매트 포함)	가입금액 한도
신10대가전제품 수리비용손해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보상(자기부담금 2만원) * 신10대가전 : 정수기, 전기오븐, 식기건조기, 커피머신, 전기레인지, 전기밥솥, 선풍기, 에어프라이어, 음식물처리기, 온수매트(전기매트 포함)	가입금액 한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8대문화용품 수리비용손해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보상 (자기부담금 2만원) * 8대 문화용품 : 컴퓨터, 안마의자, 노트북, 프린터, 헤어스타일러, 드라이기, 비데, 와인셀러	가입금액 한도
화재별금	대한민국내에서 벌금형의 원인이 되는 화재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2,000만원 한도
가족화재별금	대한민국내에서 벌금형의 원인이 되는 화재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2,000만원 한도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민사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변호사비용 : 1,500만원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 + 송달료 : 500만원한도
임대차보증금법률비용 손해	피보험자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변호사비용 : 1,500만원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 + 송달료 : 500만원한도
(가족)과실치사상 별금비용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이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또는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된 경우	700만원 한도(과실치사일 경우 500만원)
부동산소유권법률비용 손해	피보험자에게 부동산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변호사비용 : 1,500만원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 + 송달료 : 500만원한도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 별금비용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2,000만원 한도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행정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변호사비용 : 1,500만원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 + 송달료 : 500만원한도

주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해등급에 따른 지급금액 예시표(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장해등급	지급금액	장해등급	지급금액
1급	1,000만원	7 ~ 8급	300만원
2급	800만원	9 ~ 10급	200만원
3 ~ 4급	700만원	11 ~ 12급	100만원
5 ~ 6급	500만원	13 ~ 14급	50만원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① 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 회사는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을 때부터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 시에 제 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배상책임 및 재물손해 등 관련 보장은 배상책임 및 재물손해 등을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다수계약이란?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 ③ 공제금액이 있는 경우 지급보험금에서 해당 공제금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④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보험료 산출기초 및 공시이율

□ 보험료의 구성

보험료는 계약자가 계약에 의거하여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요금을 말하며, 보험료는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장순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적립순보험료, 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조사를 위한 손해조사비로 구성됩니다.

□ 적용이율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란?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부분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적립부분 적용이율(공시이율)이란?

적립부분 적용이율(공시이율)이란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의 납입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적립해 나가는데, 이 적립금을 적립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최저보증이율이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 ① 이 상품의 보장부분 적용이율은 연단위 복리 2.5%입니다.
- ② 이 상품의 적립순보험료에 대한 적용이율은 이 보험의 “보장성-1701 공시이율”(매월변동)에 연동됩니다.
 - “보장성-1701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가 정한 이율을 말하며, 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주1)}과 외부지표금리^{주2)}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적용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합니다.
 - 주1) 운용자산이익률은 직전 1년간의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과 투자영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출
 - 주2) 외부지표금리는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고려하여 산출
-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해당상품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③ 이 상품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2%입니다.

□ 적용위험률

적용위험률이란?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적용위험률 예시>

(기본계약, 주택(아파트)물건 1급, 500㎡)

담 보	적용위험률
화재손해	0.000043
화재배상책임 II	30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라. 보험가격지수

□ 보험가격지수

보험가격지수란?
해당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평균공시이율, 평균해지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상품군별로 손해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기준 : 1종(홈케어), 아파트, 1급(면적 100㎡), 10년만기, 전기납, 실손보상형)

보험가격지수(%)	
남자	여자
97.6	97.6

(기준 : 2종(비즈케어), 일반음식점, 1급(면적 100㎡), 10년만기, 전기납, 실손보상형)

보험가격지수(%)	
남자	여자
105.1	105.1

마.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은 무배당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해약환급금

<1종(홈케어)>

- 가입기준 : 1종(홈케어), 아파트 1급(면적 100㎡),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5만원
- 기본계약 : 화재손해(실손) 1억원(건물)
화재배상책임 II 대인1억원, 대물1억원

(단위 : 원, %)

구 분	납 입 보험료	해약환급금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600,000	298,000	49.8	302,000	50.5	302,000	50.5
3년	1,800,000	1,417,000	78.8	1,453,000	80.7	1,453,000	80.7
5년	3,000,000	2,540,000	84.7	2,638,000	88.0	2,638,000	88.0
7년	4,200,000	3,668,000	87.3	3,862,000	92.0	3,862,000	92.0
10년	6,000,000	5,318,000	88.6	5,719,000	95.3	5,719,000	95.3

<2종(비즈케어)>

- 가입기준 : 2종(비즈케어), 일반음식점 1급(면적 100㎡),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5만원
- 기본계약 : 화재손해(실손) 1억원(건물)
화재배상책임 II 대인1억원, 대물1억원

(단위 : 원, %)

구 분	납 입 보험료	해약환급금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600,000	229,000	38.3	233,000	38.9	233,000	38.9
3년	1,800,000	1,231,000	68.4	1,263,000	70.2	1,263,000	70.2
5년	3,000,000	2,237,000	74.6	2,324,000	77.5	2,324,000	77.5
7년	4,200,000	3,247,000	77.3	3,418,000	81.4	3,418,000	81.4
10년	6,000,000	4,735,000	78.9	5,090,000	84.8	5,090,000	84.8

주1) 상기 예상환급금/환급률은 천원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를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보장부분 환급금을 더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단,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최대한도로 합니다.(2026년 기준 평균공시이율 2.5%, "보장성-1701 공시이율" 1.65% 가정시)

주2) 실제 해지시에는 "보장성-1701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위 예시표상의 적용이율과 실제 해지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차이,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액, 중도인출, 보험료 납입일자 및 갹신담보의 갹신보험료 변경 등에 따라 예시된 금액과 해약환급금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주3) 위 표의 만기환급금은 장기유지보너스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장기유지보너스는 만기까지 유지시에만 지급 가능하며, 적립보험료가 1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일부담보의 장기유지보너스는 담보만기 조기 도래로 계약 만기 전 발생할 수 있으며, 【갹신계약】 특별약관은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4) 장기유지보너스는 향후 계약 변경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5) "보장성-1701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0.2%를 적용합니다.

주6) "보장성-1701 공시이율"은 매월 마지막날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날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주7)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주8) 가입 후 10년미만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당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써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 문답식 해설(Q/A)

□ 화재보험에서 보상되는 손해는 무엇입니까?

☞ 화재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물건(건물, 가재, 집가시설 및 재고자산 등을 말하며, 보험목적이라 합니다)의 화재로 인한 손해, 소방손해 및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 생긴 화재손해와 소방손해)를 보상하여 드리며, 보험목적에 전용주택 및 이에 수용된 가재일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입은 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물건은 어떤 것인가요?

- ☞ 아래의 물건은 보험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① 통화(기념주화를 포함합니다),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 ②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를 포함합니다) 단, 전사용자동차는 제외합니다.

□ 화재손해(실손보상, 비례보상) 담보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화재손해(실손보상, 비례보상)보장의 실손보상은 일반적인 화재보험들과 달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분	화재손해(비례보상)	화재손해(실손보상)
지급 보험금 계산 방법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 실제 손해액 보상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 손해액 ×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의 80\%}}$ (단, 보험가입금액한도)	실제손해액보상 (보험가입금액한도)

□ 가족화재벌금,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갱신계약】,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누수사고 제외)【갱신계약】,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화재배상 제외)【갱신계약】,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누수사고, 화재배상 제외)【갱신계약】에서 가족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 가족화재벌금,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갱신계약】,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누수사고 제외)【갱신계약】,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화재배상 제외)【갱신계약】,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누수사고, 화재배상 제외)【갱신계약】의 피보험자의 범위는 피보험자 본인, 피보험자 본인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기재된 배우자,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민법제777조) 및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입니다.

□ 가입 후 1년 또는 2년이내에 발생시 50% 삭감지급하는 담보와 면책기간이 있는 담보가 있나요?

담보명	면책기간	가입1년이내 발생시 50% 삭감지급	비고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갱신계약】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화재배상 제외)【갱신계약】	○(90일)	X	누수 이외의 사고는 면책기간 없음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자료로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